

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

제정 : 2009.03.01

개정 : 2014.11.01

개정 : 2021.12.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.)와 협정을 맺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교수, 학생교류 등을 통한 복수(공동)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1. 12. 01.>

제2조(정의)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 12. 01.>

1. “외국대학교” 라 함은 복수(공동)학위 수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2년제 이상의 정규대학을 말하며 “교육과정 공동운영” 이라함은 외국대학교와의 협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1. 12. 01.>
2. “복수학위(Dual Degree)” 라 함은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교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각 대학교 명의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3. 공동학위(Joint Degree)” 라 함은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교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두 대학교가 하나의 학위증서에 두 대학교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1. 12. 01.>

제3조(적용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교수, 학생 교류 등을 통하여 복수(공동)학위를 취득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1. 12. 01.>

제4조(교육운영) ①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은 서로의 교육과정을 비교, 평가하여 복수(공동)학위 수여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과정을 상호 협정하여 편성·운영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1. 12. 01.>

② 본 대학교와 외국대학교는 서로 제공받은 교육과정 자료를 바탕으로 복수(공동)학위 과정의 세부 교육운영을 위한 방안 등을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 운영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1. 12. 01.>

③ 복수(공동)학위 운영에 따른 교육의 질적인 관리를 위한 교수교류 등을 운영한다.

제5조(학위수여) ① 본 대학교 및 외국대학은 졸업(학위수여)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

서 상호 협정된 사항에 따라 복수(공동)학위를 수여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1. 12. 01.>

② 협정사항에는 외국대학과의 복수(공동)학위를 수여하는 전공분야 및 인원 등을 명시한다.

제6조(등록 및 학점인정) ① 복수(공동)학위 과정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교에 등록금을 납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01., 2021. 12. 01.>

② 복수(공동)학위 과정의 원만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수강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.

③ 학생교류에 따른 등록 및 학점인정 사항은 외국대학과의 협약 체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수업연한) 수업연한은 해당학과 또는 전공별 수업연한과 동일하게 시행하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관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 부터 시행한다.